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6. 2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6월 28일(수) 10:00~18: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96호 및 제97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의결 제107호~제126호, 보고 제21~제29호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9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현재는 장외거래를 할 때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도입된 것인지?
 - (보고자) 우리나라가 1992년에 상장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그때의 취지는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자 하였음. 그러다 보니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부여해서 장내거래는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다 식별하고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겠다는 것이었고 장외거래. 다시 말해 거래소 안에서 체결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하였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에서 사전심사를 하면 투자자가 누구이고 장외거래로 얼마에 사고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투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키지(Package)로 보시면 될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97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98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감사부 쪽에서 두 차례에 걸친 안내사항이 있었음. 감사부에서 안내한 내용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당 위반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첫 번째 감사부에서 안내한 내용,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은 모집매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인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떠한지?
 - (보고자) 회사가 안내한 모집매출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임직원매매 부분과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이것을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공모주 청약을 해서 그것이 상장된 상태에서 나중에 매도를 할 때, 회사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매도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 (위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동기를 '상'으로 하신 것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음.
 - (보고자) 특히 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반 상장주식과는 달리 내부정보 이용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있고 감사부의 내용이 다소 좀 불충분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처리할 때 애로사항도 조금 있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한 특수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금융위 안전 검토소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성명의 가운데를 동그라미 처리를 해서 조금 보호해 주는 조치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보면 OOO의 조치 위반동기의 '중', '하'와 거래소 직원의 위반동기 '상', '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과연 형평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감사부에서 안내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동기를 '상'으로 본다면 도대체 거래소 직원에 대해서 위반동기를 '중', '하'로 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선뜻 납득되지 않음. 세 번째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공모주 청약할 때 따상상까지 가니까 국민적인 재테크 수단이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하지만 적어도 금융당국. 거래소직원이 공모주 청약에 이렇게 광풍처럼 청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만약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자율결의로 하든 도덕으로 권유를 하든 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시장관리기관 직원의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라고 생각함.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음.

- (보고자)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 직원이 공모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원천적으로 맞느냐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일단 공모주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임직원매

매를 규제하는 이유가 금융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는 관점의 취지에서 봤을 때, 공모주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위법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그다음에 감사부의 안내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봤을 때 위반동기의 조정이나 그런 부분은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그다음에 두 번째 형평성 부분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관리기관의 직원들이 공모주 청약에 취지상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정책에 대한 판단 여지도 있어 보이는, 그것은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본시장 쪽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됨.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반동기와 관련하여 과거 타기관에서의 조치선례를 참고하고 전반적으로 한국거래소 감사부의 안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고, 특히 000의 일부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부 안내가 오인을 하게 된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99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0호 『(주)한내포티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은 1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증권의 모집가액을 합산해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두 번째는 6개월 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모집에 의하지 않고 사모방식으로 한 것을 합산해서 50인이 넘으면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첫 번째 2018년 9월1일 기준으로 보면 158인에게 과거 1년 동안 모집을 17.6억 원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로부터 두 달 20일이 지난 2018년 11월20일에는 15.3억 원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반행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혹시 2018년 11월20일 기준으로 모집은 모집끼리 합산하니까 332인 모집했다, 모집금액 32.9억 원이라고 이렇게 볼 소지는 없는지?

- (보고자) 각각의 증권 발행에 있어서 50인 이상이고 그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각각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각각 위반이 발생한 건임. 두 번째 것은 합산해서 하나의 건으로 보기에 무리인 것 같음.

○ (위원) 2018년 9월~11월에서 158인, 174인인데 이것이 벤처법상 조합에 들어 있는 조합원의 수를 다 합산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조합원 개인들이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어떤지 하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 (보고자) 맞음. 파악해서 배제된 사람을 다 빼고 산정한 숫자임.

○ (위원) 적격, 전문 빼고 일반투자자만 해서 그렇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이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를 '중'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첫 번째 발행의 경우에는 높았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기자본 비중이 좀 낮아지는 현상이 나왔음.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위반의 중요도가 '상'으로 판정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중'으로 판정되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1호 『(주)골드앤에스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금 거짓된 부분이 담보 제공약정과 실질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쓰였는데 운영자금으로 기재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보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주요사항보고서 위반과 관련은 없습니지만, (주)☆☆☆ 저축은행이 책임을 질 일은 없는지?

- (보고자) (주)☆☆☆☆☆☆저축은행은 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특별히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2호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관련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민트에어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지?

- (보고자) 4억 원 조달함.

○ (위원) 4억 원 조달했는데, 그 조달 시기가 언제인지?

- (보고자) 2019년 6월 269명으로부터 4억 원을 모집하였음.

○ (위원) 그러면 이 (주)민트에어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좀 되는 편이었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혹시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 (보고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외에서 주식거래된 비중이 총발행주식 대비 3.6% 정도였음. 위반기간 2년 동안 누적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 수준임.
- (위원) 여기 안전에 표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최근 2년 동안 결산매출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인지? 영업을 안한 것이었는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만 손익이 잡힌 것 같고 매출액 자체는 2020년에도 1억 5,300만 원이고 2년 연속 매출액이 없는 회사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 (보고자) 이 회사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2019년도에 자금을 조달했고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직원들이 다 퇴사를 했다고 함. 그래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회사의 2022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96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것이 회사 주장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투자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음. 그런데 이것이 감사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았음.
- (위원) 2020년 4월, 2021년 4월 계속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를 했는데 조사는 2023년에 들어가서 결국 2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처음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를 했을 때 바로 조사에 들어가 조치를 했다면 1년치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한지?

- (보고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결산서류를 게재하라고 다 안내를 했었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대해서, 연락이 되는 회사는 그렇게 했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했다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들이 계속 결산기에 안내를 하고 있음. 중개업자 ☆☆☆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결산기 이 시점 즈음에 결산서류를 제출해서 공시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몰라서 이것을 안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다만,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
- (위원) ☆☆☆ 같이 등록된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그런 안내를 받을 때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했는지가 약간 의문임.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움.
- (보고자) 참고로 한국예탁결제원도 ☆☆☆를 포함해서 15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결산서류 제출 관련 협조 공문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 경우에도 결산 공시 시점 즈음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서 각 회사 별로 일일이 다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유선통화로 이런 내용을 계속 안내하고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음.
- (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알려주어도 못하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음.

- (위원) 작은 회사이고 결산서류 작성도 못하고 외부감사도 당연히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마저도 폐업을 하겠다는 상황임. 그래서 위법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클라우드펀딩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존립조차 안 되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자조심에서 고민했던 부분임. 공시심사실장님, 만약 증선위 차원에서 2,400만 원이 과하다고 하여 제반정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더 감경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지?
- (위원) 조달금액 규모도 크지 않고 사실상 재무제표도 거의 망가진 곳임.
 - (보고자)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령상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그렇다면 증선위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장) 증선위 차원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제102호 안건은 조치원안의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업체 규모와 상황, 위반행위 등에 비

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업무규정과 검사 및 제재 규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규 등을 감안하여 1,2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03호 『(주)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4호 『OOOO(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05호 『(주)아센디오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06호 『(주)초록뱀이엔엠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참여자) ○○○○(주)의 경우 금융실명법의 위반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징금이나 벌칙대상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과태료 부과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해서만 부과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참여자) 지금 보시는 것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지금 이 조치대상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07호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금 금감원에서는 과징금 12억 2,300만 원 부과 예정임을 통보하셨음. 이 건은 KB증권(주)이 신탁업자로서 특금에 DLS 편입한 것을 DLS의 모집주선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통보한 건임. 아시겠지만 지금 유사사례에 대해서 소송을 통한 법적 쟁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금신탁업자가 과연 DLS의 주선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의문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함. 아울러 과징금 12억 원대는 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추정됨. 진술인은 '고의'는 인정될 수 없고 '중과실'도 사실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함. DLS 발행인은 NH투자증권(주)으로서 발행계약서에서 NH투자증권(주)은 증권발행이 적법하다는 점. 즉,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보장했고 KB증권(주)은 이를 신뢰하였음. KB증권(주)에서는 법규위반 방지 목적의 자체 점검을 했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발행인이 아닌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책임을 물었던 판례는 본 사항과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본건에서는 KB증권(주)이 DLS 발행에 관한 주요업무를 주도한 바 없고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도 없었음. 위원회의 조치 선례에 따르면 판매사가 발행조건 결정 등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 주선인 책임을 묻지 않았음. 본건의 경우 NH투자증권(주)이 DLS의 발행 여부 결정, 상품구조 결정, 운용전략, 수익률, 발행일자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 결정을 전담했고 거래(deal)를 주도하였음. 또한, 위원회의 조치 선례에 따르면 DLS 판매인이 수취한 판매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적극가담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본건에서 KB증권(주)이 수취한 수수료는 1%대 수준으로써 일반적인 판매수수료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음. 본건 행위 당시 법령상으로 과생결합증권에 대한 동일성 인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조치통지서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기재되어 있으

나 본건은 舊시행령 시기에 발생한 것임. 舊시행령 시기에 동일성 인정 기준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를 주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동일성 인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은 발행인인 NH투자증권(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어서 사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동일성 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에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동일증권 기준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그 개선안 발표는 본건의 마지막 회차 발행 직전에 이루어진 바 있음. 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시행령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추가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것인지를 보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되고, 중요한 부분은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도입하고 있음.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의 기초자산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특히 주목하실 사항은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것임. 기존 법령상에 동일성이라는 말밖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시행령에서 유사성을 두고 있음. 저희 사안은 사실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유사한 구조로 수차례 발행된 건에 해당됨. 이 시행령 개정은 본건 행위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음. 그래서 저희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임. ‘고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

실'이 필요한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KB증권(주)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저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KB증권(주)에서 2019년 12월31일 NH투자증권(주)과 유선연락을 취했음. KB증권(주) 담당자는 NH투자증권(주) 담당자에게 여러 번의 사모상품 발행이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해석되어 공모규제 이슈(issue)가 있을 수 있으므로 NH투자증권(주)이 법률검토를 하여 이러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어야 앞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담당자와 통화했음. 이 점은 KB증권(주)에서 공모규제 강화에 따른 동일 증권 이슈(issue) 가능성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본건 행위 종료 이후라는 점이 녹취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본건 위반행위 인정을 가정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하향조정 사유 적용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리는 사항임. 또 한 가지로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정상참작도 요청 드림.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도 신고의무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본건에서 KB증권(주)의 지위,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발행사인 NH투자증권(주)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본건 조치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위원) 주선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본건 DLS 발행과정에서 KB증권(주)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발행인인 NH투자증권(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신지? 발행과정에 KB증권(주)은 어느 정도로 관여가 되어 있는지?

▶ (진술인) 지금 DLS 발행을 위한 딜소싱(Deal Sourcing) 과정에서 초기에 해외운용사에 대한 정보 소개, 연결 부분은 KB증권(주)이 관여한 바가 있음. 그 부분은 이미 자조심에서도 진술 드린 사항임. 그런데 그 이후 DLS 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를 짜는 것은 전적으로 NH투자증권(주)이 진행을 했음. 그리고 NH투자증권(주)으로서는 당연히 발행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해야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판매사 역할을 하게 될 KB증권(주) 쪽과 협의를 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위원) 新동일증권 기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주장하기에 적어도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 비슷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더욱이 여기에서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창설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

○ (위원) 그전에 공모와 관련된 파생결합증권도 증권에 해당하

고 그다음에 신고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을 창설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서 신고서 적용대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 (진술인) 2018년 5월에 시행령 입법 당시에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언급은 있었음. 그런데 거기에서는 '동일한 발행구조의 사모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유사한 구조, 그러니까 ○○○○ 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동일한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자산이 동일했음. 그런데 그것을 여러 SPC를 통해서 여러 회차로 발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발행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것은 사실 기초자산이 새로 추가되는 건이어서 동일한 구조라기보다는 유사한 구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전 해석론상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웠고 2020년,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포섭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 (위원) 아까 진술하신 내용에도 KB증권(주) 자체적으로도 혹시 이것이 모집규제 이슈(issue)는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NH투자증권(주) 쪽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달라고 한 배경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신 것 아닌지?

▶ (진술인) 2019년도 하반기의 경우에 사모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시 살펴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음. 당사는 해당 DLS를 신탁으로 판매하면서 회차별로 발행사가 해

외운용사에 후순위가 모집되었을 때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예상하는 발행의 일정(schedule)은 모르고 있었음. 다만, 2019년도 하반기에 유사한 DLS라는 것도 사모라는 시리즈 이슈(issue)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구심이 내부적으로 돌았음. 그래서 하나하나 발행사한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search)를 했고, 그전에는 이것이 공·사모 이슈(issue)에서 공모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슈(issue)라는 것은 전혀 인식을 못했음. 그 시점은 아마 2019년도에 전체적인 사모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issue)들이 있으면서 같이 살펴봤던 것으로 기억함.

- (위원) 그다음에 DLS 출시할 때의 승인문서를 보면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 매월 1회 판매될 것으로 예정’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실상 동일증권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 아닌지?
- ▶ (진술인) 그런 인식으로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음. 저희 당사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품의를 함. 그 품의 전에 절차를 통해서 상품심의를 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다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번 품의로 같음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 운용사가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해야지만 추가적인 선순위가 형성될 수 있음. 그래서 미리 매월 1회 또는 향후에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 만약에 그것이 공·사모 이슈(issue)를 인지한 상태에서 의 문구(wording)라면 그런 내용 자체를 품의서라든지 이런 쪽에 문서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음. 특히, 그 내용 자체도 향후에 확정되지 않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추정사실인 것으로 보임. 실제 발행 규모라든지, 발행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의 진술 내용 중에 동일증권 기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8년 5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유형별로 동일증권의 기준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입법 절차가 있었음. 기초자산이 있는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아까 진술인이 이것은 창설적 입법이고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동일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셨음. 금감원에서는 그전에 규정상으로도 규제 대상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규정의 취지를 보시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사실은 2018년 5월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들도 그전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동일증권성을 판단할 때 사용했던 내용들이 시행령에 그냥 규정화된 것에 불과하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적용해 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새로운 규정의 창설이라기보다는 확인적 규정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8호 『(주)OO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 (주)☆☆☆☆☆는 2018년 12월경 (주)OOOO의 최대주주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때의 인수자금 중 46억 원을 차입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주)OO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이 내용은 즉시 공시를 하여 공시내용에는 이와 같은 사실과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제공계약서, 입금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즉시 공시를 하였음. 그 이후 2019년 4월경에 저희가 담보제공계약에 의거해서 반대매매. 담보비율이 하락하여 기한이익상실이 된 것을 확인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지분변동 공시를 하게 되었음. 그 내용도 공시 누락 없이 즉시 하게 되었음. 그런데 금번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한 내용에 의거하면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조치를 받게 되었음.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면 저희가 차입계약을 허위로 꾸미고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반대매매가 나간 다음에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담보제공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시를 바로 했음.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지연도 없었고 이것을 숨긴 후 나중에 계약서를 따로 만든 것이 전혀 아님.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또 이 당시에 (주)☆☆☆☆☆ 저희가 받게 된 주식은 보호예수 주식이 아니었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을 저희가 숨기기 위해서 담보제공이나 주식대금차입계약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임.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불법행위를 하려는 원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님. 그래서 오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봐 주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임.

○ (위원) 그렇다면 ○○○○ 등에게 자금을 차입해서 차입자금으로 구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식을 ○○○○ 등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회사를 경영하려고 (주)☆☆☆☆☆가 참여를 하게 되었음. 그때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그 주체가 ♠♠♠이라는 분이었고, 그분이 소개한 분들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나 저희 조치

통지서에 나와 있는 ◀◀◀ 같은 분들을 알지 못했음.

○ (위원) ♠♠♠이라는 분이 중개인(broker)이었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분들 이름으로 저희 회사 통장에 입금을 했고 또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차입계약으로 생각을 했었음.

○ (위원) 그때 체결된 계약서가, 그때 공시를 한 서류가 담보 제공계약서인지?

▶ (진술인) 맞음. 저희가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다 공시를 했고 거기에 첨부서류로 다 들어가 있음.

○ (위원) ○○○ 등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조사 당시에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지?

▶ (진술인) 저희는 ○○○이나 이런 분들을 알지 못함.

○ (위원) ○○○과 직접 도장 찍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개인(broker)을 한 사람이 중간에서 일을 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분이 단순 중개인(broker)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의 총대표였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혹시 ♠♠♠ 이분이 주식매매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주식담보제공계약서도 작성을 해서 각 상대방에게 서로 다른 서류를 교부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듭.

- (보고자) 오늘 진술인은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가 되었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된 후에 바로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음. 그리고 지난 번 자조심에 와서 ♠♠♠ 실명을 처음 언급을 했음. 지금 이 사건은 위조에 의한 허위담보계약서인 동시에 사건이 하나가 더 있음.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주가가 3배 정도 뛰었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난 상태에서 담보계약서에 보고했던 주식들이 바로 매도가 되었던 사건으로 시세조종과 대량보유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얽혀 있는 사건임. 거기의 주범이 ♠♠♠으로 추정이 됨.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를 할 때 ♠♠♠도 조사를 할 예정임. 그런데 오늘 오신 진술인께서는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다가 갑자기 자조심에 와서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형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위원) 검찰이 추가 사실관계 규명을 확인할 테니 수사기관 통보를 하고, 금감원 조치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9호 『주권상장법인의 2020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원인이 담당자의 단순실수로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별도재무제표가 업로드 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만약 당사에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별도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만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임. 그리고 금융위에서 발표하신 직권지정사유 폐지 또는 완화 방침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주기적 지정의 마지막 3년차 감사를 받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다시 1년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바랍.
- (위원) 2월 8일이 제출기한인데 증선위에 제출할 때는 연결재무제표만 첨부하고 별도재무제표는 업로드를 안 하신 것이고, 2월 8일에 감사인에게 보낸 E-mail에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다 첨부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 ▶ (진술인) 맞음. 저희가 감사인에게는 다 제출했음.

○ (위원) 현장감사 착수일이 2월 6일이고 제출한 것이 2월 8일
이어서 현장감사 착수 후에 제출했다고 지적이 된 것이 주
된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 (진술인) 감사인들이 현장(field)에 나온 날짜는 6일이 맞
고 회사에서 결산이 된 자료를 드려야 감사절차를 진행하
였음. 그런데 저희 회사가 평가 부분이 미진하여 사전양
해를 구하고 저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증선위에
제출하고 감사인에게 그 자료를 드렸다는 의미임.

○ (위원) 주기적 지정 3년째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회계법인
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적을 받거나 '적정' 말고 다른 의견 있
었던 것이 있는지?

▶ (진술인)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인의 지적을 다 수용해서
특별히 감사보고서상 지적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않았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감사인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이며 물론
현장감사 착수일이 2월6일 토요일이어서 실질적인 감사는 2
월8일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월8일에 감사인
에게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다 제공이 된 점, 그
리고 2월8일이 제출기한인 점들을 감안해서 1단계 정도 감
경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임.

-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논리적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양적으로 보면 중요한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반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달리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위원장) 지연제출 내지 미제출이기는 하지만 현장감사가 토요일에 착수되어서 지연됐다는 측면, 주기적 지정 마지막 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아미코젠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 1년'이 아니라 '경고'로 1단계 감경하는 것으로 증선위는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21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3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22호 『(주)셀트리온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3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23호 『(주)셀트리온제약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3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같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10호 『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재심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21년 5월17일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이후 금융거래를 못하게 된 당사는 유동성 부족과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으로 파산위기에 처했고, 이에 본사 부동산을 매각하여 생존자금을 마련하였음. 또한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를 대폭 줄였으며 남은 재원으로 신사업을 추진해 왔고 신사업부분의 설비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음. 현재 보유 자금은 신사업이 안정되기까지 최소한의 생존자금임. 비록 상폐는 되었으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간청 드림.

▷ 진술인이 퇴장함.

(15시 59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위원장) 증선위의 재심의 대상인지 등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이 추가로 검토해 주시고 논의되기를 바람. 제110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11호 『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6시 3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의결안건 제112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3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4호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5호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6호 『우리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7호 『안경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8호 『예교지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19호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20호 『선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21호 『예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122호 『한길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우리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위반으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등록요건에 기술되어 있는 문언만으로는 지적받은 위반사항이 등록요건 위반으로 판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등록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음. 또한,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조치근거는 작년 5월에 신설되었고 우리회계법인은 작년도 3월말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된 조치기준에 부합한 감리에 대응할 수 없었음. 마지막으로 등록요건 위반 등에 대한 최초 조치인 점 등을 헤아려주셔서 감경적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일부 감사팀이 자금운용 및 차입상환 등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 ▶ (진술인) 감사인 등록 이전부터 있었던 차입금인데 그 후에 채권회수로 일부 정리를 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두었습니다만 작년 조직 감리 받은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100% 다 정리를 했음. 그리고 감사인 등록 이후에는 차입금을 매년 상환만 했지, 추가로 차입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알겠음. 차입금은 그렇고, 자금운용과 관련 되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 (진술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임. 어느 한 팀에서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제시를 해서 제가 승인을 하고 집행했던 그런 내용임. 다만, 그 투자에 대한 성과는 내부적인 성과 배분의 측면에서 해당 팀의 성과에 상당 부분을 반영해 준 그런 내용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여기에서 논의되는 제재는 명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제재해 주시고, 개별 지적건별로 지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품질관리제도 관련 개선권고 10건이 모두 공개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임.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코로나19가 심한 상태에 있었고 품질관리실장 부재는 그 상황 자체가 저희 법인 내부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저희는 고의적으로 품질관리실장의 선

임을 지연시킨 점은 전혀 없었고 최대한 빨리 품질관리실장을 선임하고 품질관리실장 대행체계도 마련하여 품질관리실의 업무 자체에는 지장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바임.

○ (위원) 품질관리담당 등기이사를 두는 것이 등록유지요건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인지?

▶ (진술인) 네. 당시 등기를 하려면 사원총회의 총결의가 필요한데, 그 당시 모임 자체가 인적으로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원들과 여러 번의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이 됐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그 공백(gap)을 줄이려고 노력했었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사의 품질관리평가와 보상체계 연계가 미흡하다는 내용 관련해서 저희 법인이 '보통'의 처분을 받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제도를 설계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까지는 완료했으나 일부 본부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감안하여 '경미'로 경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림.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감리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리위 수정심의안 결과에 동의함.

○ 의결안건 제112호, 제113호, 제117호 안건은 각각 원안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의결안건 제112호, 제113호, 제117호는 각각 원안의결하고,
의결안건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18호,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는 각각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24호 『법정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25호 『미립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26호 『정일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27호 『진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28호 『(주)□□□□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29호 『(주)☆☆☆☆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23호 『메리츠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융감독원은 前대표이사가 개인 유튜브에 당사 5개 펀드상품을 광고하면서 광고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음. 본건의 본질은 前대표이사가 개인 지위에서 한 행위이라는 것임. 대표이사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와 개인 지위에서 한 행위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당사의 광고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함. 개인 지위에서 유튜브를 독자적으로 관리했고 당사는 개인 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혀 수취하지 않았음. 그리고 당사 준법감시인은 개인 계정도 광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절차를 무시했음. 이러한 사정을 보면 본건 위반이 개인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이러한 본건의 본질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은 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시 기준금액을 본건 펀드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금소법 제57조는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언에 충실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펀드의 판매금액이 아닌 당사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인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과징금 산정시 부과기준율과 관련하여 회사 차원에서는 고의성이 없거나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

함.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과징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감액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산정시 감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의 상품을 광고한 것이고, 광고의 효과는 상품이 판매되면 회사로 귀속되고 그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투자자들도 이것은 회사가 아닌 회사와 절연된 개인의 행위라고 인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함. 회사는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 ▶ (진술인) 일단, 저희가 의견진술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당사의 광고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음. 그런데 저희 당사와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당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개설된 개인 유튜브 계정에 임의로 당사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린 부분이 있음.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징금산정시 감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임.

○ (위원) 소비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떠한지? 확인된 내용인지?

▶ (진술인) 맞음. 민원이나 피해 발생 내역 없음.

○ (위원) 아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는데 금융 지식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준법감시인이 권고까지 했는데 왜 이것을 무시하셨는지?

▶ (진술인) 원래부터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이나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개설했고 그런 내용을 담으려는 목적으로 담은 영상들이 많이 있음. 그런 취지에서 단순히 금융지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광고절차 준수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무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영상 게시 전에 알게 된 것인지? 게시 후에 알게 된 것인지?

▶ (진술인) 일단, 저희는 검사가 나오고 나서 개인 채널에 영상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음.

○ (위원) 준법감시인이 前대표이사에게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지?

- ▶ (진술인) 그 부분은 개인 채널에 처음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본건 펀드 위반과는 무관하게 예전에 펀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일단 모든 내용을 협회심사를 받거나 광고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는 것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음.
- (위원) 방금 그 말씀은 준법감시인이 얘기를 했을 때 이 5개 펀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 계정에 영상을 올릴 때는 조심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말씀인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렇다면 이 5개 펀드와 관련되어 이번에 검사 나오기 전까지 회사는 몰랐다는 것인지?
- ▶ (진술인) 사실 담당 직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회사가 전혀 몰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음.
-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소법 제57조제1항 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시 기준금액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경우 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 부분이 만약에 단독광고채널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경우와 복수의 채널이 있는데 한쪽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와 관계없이 전체 판매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채널과 복수의 채널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여쭙어 보고 싶음.

- (보고자) 동 건은 메리츠자산운용(주)이 직판업자로서 판매한 상품임. 직판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찾아오거나 고객들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경우임. 그런 경우에는 판매회사 채널로 가서 판매회사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이 펀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메리츠자산운용(주)에 찾아가서 상품을 사게 된 것임. 그렇기 때문에 동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을 통한 광고행위가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인지?
 - (보고자) 맞음. 이 상품은 직판을 위해 만든 상품임. 그래서 판매보수 부분이 작고 운용보수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품임.
- (위원) 이 금액이 정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뿐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와 무관하게 증권회사를 찾아온 고객들한테 증권회사가 권유해서 투자한 금액도 포함 되어 있는지?
 - (보고자) 메리츠자산운용(주)은 직판업자로 인가를 받은 회사임. 증권사에는 이 상품이 없음. 홈페이지에도 광고가 없었고 메리츠자산운용(주)은 판매회사가 아니니까 지점이 없음.
- (위원) 공모펀드인데 회사가 상품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것으로 직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 (보고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가 38만 명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고 자기가 상품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가입도 함. 앱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음.
- (위원) 법문언 자체는 이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광고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는 맞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유튜브 채널 광고가 거의 유일하다 보았음. 금소법상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수입 등'이라고 잡은 것 자체가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수를 그렇게 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
 - (보고자) 당시에 저희 검사반에서 파악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정 펀드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메리츠자산운용(주)의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직원에 대한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표와 직원 간에 공식적인 대화,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음.
 - (보고자) 준법감시인이 주의(warning sign)를 줬던 것은 2019년에 있던 일인데 당시에 금투협회에서 금투협회회원사들이 광고나 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매체 이용할 때에도

광고나 금투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함.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회사에서는 계속 대표이사의 개인행위라고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보고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도 채용했음. 회사도 유튜브 채널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했음.

○ (위원) 회사 비용으로 다 한 것인지?

- (보고자) 회사에 비용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다 알고 있었음. 메리츠자산운용(주)이 계속 개인의 행위였다라고 하기 보다는 38만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위원) 아까 진술인이 10억 원 상한,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과징금부과기준상에 부당이익 규모의 10배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다만,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됨.

- (위원) 과징금과 과태료 동시 부과에 대한 검사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 (보고자) 과태료부과기준상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 동일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음. 과태료는 既부과한 과징금에 따라서 과태료 면제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참여자) 금소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보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것인지?
 - (보고자) 현재는 저희가 과징금 계산할 때 과징금부과기준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부과기준액이 수입액으로 되어 있어서 수입액 이외에 단서조항에 대한 것은 현재 기준화된 것이 없음.
- (위원) 저는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고 만약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과태료는 질서벌적 성격인데 이것이 부당이득 환수 외에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조항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해야 된다면 금액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서로 합산해서 한도가 주어지게 하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인과관계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음.

- (위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임. 부당이득금액에 대해서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음. 그래서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은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그다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모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과징금만으로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과태료부과는 면제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듦.
- (위원장) 정리를 하겠음. 위원님들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동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함. 먼저, 금소법 제57조제1항 '수입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소비자정책과와 함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매출 내지는 관련 수입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두 번째는 유튜브 행위가 과연 회사의 행위이나,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 이것은 회사의 행위라고 해서 회사의 금소법상의 판매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임. 세 번째는 부당이득 10배 이내에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부분인데, 이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당이득이 뭐냐, 판매보수만이나, 운용보수만이나에 따라 부당이득의 전체 한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운용사 직관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판매보수만이 아니라 운용보수까지 포함해서 부당이득을 산정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듦. 과징금, 과태료가 분명히 있는데 2009년도에 정부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동일한 원인행위에 대해서 같이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전 법령정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음. 많은 금액 또는 과징금을 우선으로 부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하겠음.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3호 안건과 관련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선위 수정 심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겠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제를 위반하여 펀드판매한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동일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상 감경기준을 감안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 대한 과징금을 9억 7천4백만원으로, 과태료를 1억2천만원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24호 『삼성자산운용(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법규명령 위반이나 내규위반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검사국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고민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음.

- (보고자)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은 현재는 법에서 정하고 시행령, 훈령, 협회규정에서 사회상규를 위반한 부당한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안 된다고 되어 98만 원이라는 금액이 업계의 관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ETF 주식대여업무 직원한테서 접대를 받게 되면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 회사에서 내규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제재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 우리는 좀 더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배를 한 행위는 제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 듯 함.
- (위원) 지금 협회규정 제2-68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런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협회규정 제2-68조를 적용하게 되면 제공자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함.

- (보고자) 제공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어느 정도의 로비를 위한 금액을 허용받고 있음. 같은 행위에 양 방향에 있는 거래당사자이기는 하지만 행위의 목적과 행위할 수 있는 양태가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했음.

- (위원) 그런데 받는 측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고 있고 제공하는 측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임.

- (위원) 만약 이것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
- (위원) 내규의 영역이니까 엄한 내규를 적용한 곳에서는 그 내규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음.
- (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조치안은 “회사내규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법령 위반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수령의 부당성 판단 기준이 사실상 개별 회사의 내부기준에 의해 가늠되고 부당성 판단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을 경우, 단순 내부절차 위반과 실질적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수령의 구분이 어려워져, 제재기준의 명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위법행위와 단순 내부절차 위반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상 재산상 이익제공·수령에 대한 제도·기준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규위반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체 징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25호 『메리츠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26호 『알지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